

(재)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내규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청소년수련관 체육시설 관리운영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0년 12월 31일

## 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재)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규칙 제38호

### 청소년수련관 체육시설 관리운영 규칙

제정 2020. 12. 31. 규칙 제38호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화성시청소년수련관의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표준화와 관리의 제도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화성시청소년수련관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화성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또는 재단의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① “체육시설”이라 함은 화성시청소년수련관 내의 체육시설을 의미하며, “관리운영”이라 함은 시설의 유지 보수 및 사용자에 대한 관리를 말한다.
- ② “사용자”라 함은 사용료 등을 납부하고 체육시설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과 체육시설에 대관을 신청하여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 ③ “회원”이라 함은 1개월 단위의 체육시설 프로그램 수강료를 납부하여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 ④ “개시일”이라 함은 수강기간이 정하여진 경우 수강 기간이 시작되는 초일을 말한다.
- ⑥ “프로그램”이라 함은 수영, 헬스 등 회원에게 제공되는 교육 서비스를 말한다.
- ⑦ “1일 입장”이라 함은 1일 사용료를 지불하여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 제2장 체육시설 운영관리

**제4조(운영시간)** 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은 「화성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를 따르고 세부 운영시간은 청소년수련관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조(휴관일)** 체육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휴일(일요일은 매월 첫 번째, 세 번째 주 휴관)
2. 정부에서 지정한 임시공휴일
3. 시설 보수공사, 재난,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재단에서 지정하는 날

**제6조(회원가입)**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회원가입을 하여야 하며 회원 가입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온라인의 경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ID 및 비밀번호를 발급 받는다.
2. 현장의 경우 체육시설을 방문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신청한다.

**제7조(프로그램 정원기준)** 청소년수련관장은 시설규모, 수업형태, 수용인원을 감안하여 정원 기준을 정한다.

**제8조(프로그램 등록)** 신규 회원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표 1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회원의 당해 프로그램 재등록이 끝난 후 결원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제9조(프로그램 재등록)** ① 회원이 프로그램을 연장하여 이용하기 위해서는 재등록하여야 하며, 재등록 기간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 ② 회원이 프로그램 재등록을 하지 못할 경우 제8조에 따라 프로그램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0조(프로그램 이용시간 변경)** ① 회원은 동일 종목의 동일 수준에 한하여 프로그램 이용 시간을 변경 할 수 있으며, 변경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이용시간에 결원이 있을 경우

에만 가능하다.

②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 이용시간 변경하기 위해서는 별표 3의 절차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신청한다.

**제11조(프로그램 이용기간 연기)** ① 회원이 회원 본인 및 직계가족의 질병, 장기출장 등의 사정에 의해 프로그램 이용을 못 할 경우 프로그램 이용 기간을 1회에 한하여 1개월간 연기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1개월 이상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 이용기간 연기는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신청한다.

**제12조(프로그램 개설 기준)**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설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개설할 수 있다.

1. 프로그램 개설과 관련된 회원 건의사항
2.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 또는 회원 설문조사 의견수렴
3. 인근 다른 시설의 유사 프로그램 운영사례
4. 강습시간, 수강료, 모집대상, 이용수요 등

**제13조(프로그램 폐강 기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프로그램을 폐강할 수 있다.

1. 모집정원 대비 등록인원 50% 미만인 프로그램
2. 불가피한 사유로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할 경우

②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수련관장은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폐강을 연기할 수 있다.

**제14조(환불 기준)** ① 사용료 등의 환불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프로그램 수강료를 환불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료 등의 감면)** 사용료 등의 감면 기준은 조례 제13조를 따른다.

**제16조(사용수칙)** ① 체육시설 사용수칙은 별지 제5호와 같다.

② 부서장은 적절한 장소에 사용수칙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부서장은 제1항의 기본적인 사용수칙 이외에 시설의 여건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내용을 추가하거나 별도의 사용수칙을 게시할 수 있다.

**제17조(사용제한)**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해당되는 사람에게 입장 제한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병, 배변장애, 음주 및 심신미약 등으로 다른 여러 사람에게 보건위생·안전상의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사람
  2.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 ② 부서장은 체육시설 사용자가 제1항 1호 내지 2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진단서 또는 확인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불응할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8조(회원의 자격정지)** 회원의 자격을 보유한 사람일지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재단은 그 회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1. 타인에게 회원증 대여 또는 무단 양도, 양수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2. 싸움, 소란, 기타 등의 사유로 다른 사람의 시설 사용 및 프로그램 이용에 방해 하는 행동을 하여 관리직원 또는 지도 강사로부터 1회 이상의 경고 또는 주의 조치(구두 또는 서면)을 받은 경우
3. 회원등록 또는 일일 입장권을 지참하지 않고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거나 시설물을 사용한 경우
4. 상행위 또는 프로그램 수강 시 배타적 화합과 강제적인 금전 거출행위가 명확하게 확인된 사람

**제19조(프로그램 사용요금)** 프로그램 사용요금은 별표 5와 같다.

**제20조(대관)** ① 재단은 조례에 따라 빙상장, 실내체육과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대관 사용료는 별표 6과 같다.

② 시설의 대관사용, 변경, 취하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제3장 개인 사물함 운영관리

**제21조(개인 사물함 사용)** 개인 사물함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표 7의 사용 기준에 따라 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22조(개인 사물함 반환 절차)** 개인사물함의 반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은 재등록하지 않을 경우 사물함 사용기간 내 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2. 재단은 사물함 내에 보관되어 있는 물품을 수거하지 않은 회원에게 물품수거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23조(개인 사물함 사용료 미납회원 물품관리)** 재단은 개인 사물함 미납회원의 물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 사물함에 보관되어 있는 물품을 수거하여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회원 성명, 수거일, 수거물품 등을 별지 제9호 서식에 기록한다.
2. 물품 수거 후 회원에게 물품 회수요청과 별도 보관기간을 안내한다.
3. 수거된 물품은 별도의 장소에 1개월 동안 보관하며, 1개월 이내에 회원이 물품을 회수하지 않을 경우 폐기처분한다.

## 제4장 안전사고의 처리 절차

**제24조(안전사고의 처리 절차)** 체육시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사고자가 경상일 경우 필요한 응급처치를 하여야 한다.
2. 사고자가 중상이거나 의식이 없을 경우 최초 발견자는 즉시 119 신고 및 운영사무실에 알려야 하며,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 까지 응급 처치를 한다.
3. 최초 발견자는 사고시간, 사고자의 인적사항, 조치내용, 사고발생 경위 등을 별지 제10호 서식의 사고경위서를 작성한다.

**제25조(보험처리 적용기준)** 보험처리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 이상, 고장 또는 관리상의 소홀로 인한 사고
2. 직원의 지도를 준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사고

**제26조(보험처리 예외 기준)** 보험처리 예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과실 또는 고의에 의한 사고
2. 강사 또는 직원의 지도나 안내사항 불이행으로 일어난 사고
3. 제3자에 의한 과실, 폭력 등으로 일어난 사고

## 제5장 안전근무 및 수질 관리 기준

**제27조(안전근무)** ① 수영장 운영 시간에는 감시탑에 수상안전요원을 2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② 수상안전요원은 침전물 및 사고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50분마다 수영장 수조 안

의 사람을 밖으로 나오도록 하고, 수영장 수조를 점검한 후 입장하게 하여야 한다.

③ 수영장 수상안전요원은 별지 제11호 서식의 안전근무일지를 작성하여 일일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28조(수영장 수질 점검 및 관리)** 수영장 수질 점검 및 관리 기준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3조를 따른다.

**제29조(수영장 수온관리)** 수영장의 수온은 28℃로 유지하고, 외부기온 또는 기타 조건에 따라 2℃ 내에서 조절할 수 있다.

**제30조(사용자 준수 사항)** 부서장은 체육시설 사용자와 회원에게 별지 제12호의 체육시설 사용 준수사항을 알려야 하며, 사용자와 회원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부칙 (규칙 제38호, 2020.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규칙 시행일까지의 사용·이용료의 감면기준과 환불기준은 「화성시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적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프로그램 등록 (제8조 관련)

1. 온라인 등록 절차

연번	구분	내용
1	재단 홈페이지 접수	넷째 주 월요일·화요일 재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
2	1차 무작위 추첨	넷째 주 수요일 10:00 추첨 후 당첨자 명단 홈페이지 공지
3	1차 당첨자 이용료 결제	넷째 주 목요일 10:00 이전까지 홈페이지를 통하여 결제
4	2차 무작위 추첨	넷째 주 목요일 10:00 추첨 후 당첨자 명단 홈페이지 공지
5	2차 당첨자 이용료 결제	넷째 주 금요일 10:00 이전까지 홈페이지를 통하여 결제
6	현장 등록	결원에 한하여 넷째 주 금요일 10:00 이후부터 말일 20:30까지 안내데스크를 통하여 접수
<p>&lt;기타사항&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온라인 등록기간은 매월 넷째 주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로 하고, 등록기간이 휴관일일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다.</li> <li>2. 신규 프로그램은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재단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li> <li>3. 당첨자 명단은 추첨 후 즉시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li> </ol>		

2. 현장 등록 절차

대상	등록기간	등록시간	등록장소
화성시민 및 화성시 소재 직장인	매월 넷째 주 월요일부터 말일까지	1. 평 일 : 06:00~20:30 2. 주 말 : 06:00~17:00	안내데스크
화성시민 및 화성시 소재 직장인이 아닌 사람(타지역)	매월 넷째 주 금요일부터 말일까지		

[별표 2]

프로그램 재등록 기간 및 방법 (제9조 관련)

등록기간	등록시간	등록방법
매월 둘째 주 토요일부터 셋째 주 목요일까지	1. 평 일 : 06:00~20:30 2. 토요일 : 06:00~17:00	무인 발권기, 인터넷 접수, 안내데스크 접수

[별표 3]

프로그램 사용시간 변경 절차 (제10조 관련)

구분	신청기간	변경일자
개강 후 사용시간 변경	매월 1일부터 6일까지 (운영시간 내)	매월 7일
개강 전 사용시간 변경	매월 둘째 주 토요일부터 셋째 주 목요일까지 1.평 일: 운영시간 내 2.토요일: 06:00~17:00	매월 셋째 주 금요일

[별표 4]

환불 기준 (제14조 관련)

환불 기준	환불 금액
1. 화성시의 행사 또는 시설의 사정에 따라 사용을 못하게 된 경우 2.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사용일 이전 또는 수강 개시일 이전에 취소 신청을 한 경우	전액 환불
4. 그 밖의 사용료 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의 「별표2」 중 “공연업”, “체육시설업 및 레저용역” 및 “학원운영업, 평생교육시설운영업” 해결 기준을 준용한다.	

[별표 5]

프로그램 사용요금 (제20조 관련)

1. 수영장

(단위 : 원)

구 분	성 인(대학생 이상)		청소년(중·고등생)		유아 및 어린이(초등생이하)		
	주2회	주3회	주2회	주3회	주1회	주2회	주3회
강습요금	50,000	60,000	40,000	50,000	25,000	30,000	35,000
일일자유수영	3,000		2,500		2,000(어린이)		
월 자유수영	50,000		40,000		-		

※ 회원 강습요일 외 자유수영은 성인만 해당되며, 유아 및 어린이는 자유수영 불가

2. 생활체육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비 고
		성인(대학생이상)	청소년(중·고등생)	어린이(초등생이하)	
강 습 (월이용)	주5회	50,000	-	-	
	주3회	40,000	35,000	30,000	
	주2회	30,000	30,000	25,000	
	주1회	-	25,000	20,000	

3. 골프장

(단위 : 원)

구 분	금 액		
	성인(대학생 이상)	청소년(중·고등생)	비 고
1인/월	100,000	80,000	
1인/일	10,000	8,000	

4. 헬스장

(단위 : 원)

구 분	금 액		
	성인(대학생 이상)	청소년(중·고등생)	비 고
1인/월	40,000	30,000	
1인/일	3,000	2,500	

5. 스포츠과학센터

가. 일일측정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비 고
	성인 (대학생이상)	청소년 (중·고등생)	어린이 (초등생 이하)	
신체조성	8,000	4,000	4,000	
기능적체력평가	10,000	5,000	5,000	
척추자세평가	10,000	5,000	5,000	
균형능력평가	8,000	4,000	4,000	
근력평가(등속성)	20,000	10,000	10,000	

나. 운동프로그램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비 고
	성인 (대학생이상)	청소년 (중·고등생)	어린이 (초등생 이하)	
주3회	50,000	45,000	40,000	
주2회	45,000	40,000	35,000	
주1회	35,000	30,000	25,000	

6. 빙상장

가. 빙상장 개인 및 단체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성인 (대학생 이상)	청소년 (중·고등학생)	어린이 (초등생 이하)	비 고
일일입장		3,000	2,500	2,000	단체 20인 이상 10% 할인 물품보관료 200원 별도
월회원	주 5회	95,000	90,000	85,000	강 습 포 함
	주 3회	70,000	65,000	60,000	"
	주 2회	60,000	50,000	40,000	"
	정기이용권	60,000	50,000	40,000	강 습 제 외
스케이트 대여		3,000	3,000	3,000	○ 3시간 기준 ○ 단체 20인 이상 10% 할인

나. 연마료

(단위 : 원)

1회 이용권	스피드 : 2,500		피겨·하키 : 3,500		
월정 이용권 (보관료포함)	강습횟수 종목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스피드	10,000	15,000	20,000	30,000
	피겨·하키·선 수용	15,000	20,000	30,000	40,000

[별표 6]

## 대관 사용료 (제21조 관련)

### 1. 실내체육관

구 분			금 액		비 고
			일반	청소년	
기본 사용료	실내체육관	1회/2시간	50,000	25,000	휴일(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20%가산한다.
냉난방 사용료	실내체육관	1회/2시간	50,000	/	매시간 초과 시 기준 사용료의 20%를 가산한다.
실내체육관 조명시설		1회/2시간	15,000		

### 2. 빙상장

구 분		금 액		비 고
		성인 (대학생 이상)	청소년 (고등학생 이하)	
선수훈련	1회/1시간	120,000	60,000	단체라 함은 20인 이상 같은 목적으로 동시 입장하는 일행을 말함
체육행사	1회/1시간	200,000	100,000	
체육 외 행사	1회/1시간	400,000	200,000	

<공통사항>

- 가. “청소년” 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나. 8세 이하의 아동에 대한 사용료는 청소년에 준한다.
- 다. 시설대관의 경우 기본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 시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별표 7]

개인 사물함 사용 기준 (제22조 관련)

(단위 : 원)

구분	사용 기준		
임대 신청 및 임대료	임대 신청	사물함 사용 신청서 작성 및 안내데스크 제출	
	임대료 (월 단위)	대	5,000
		소	3,000
임대 기간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임대 연장 및 계약 해지	임대 연장	프로그램 재등록, 신규등록 기간내. 임대 기간 종료 이전에 임대료 납부	
	계약 해지	사물함 환불 신청서 작성 및 열쇠 반납, 사용료의 10% 및 취소일까지의 사용일수 공제 후 환불(신청서 제출일 기준 휴일과 휴관일 포함)	
임대 기간 초과 및 강제 반납	기간 초과	사물함 보관품 회수 후 1개월 보관	
배상	1. 개인사물함 열쇠 분실 : 5,000원 2. 사물함 훼손 : 원상복구(실비 변상) 3. 사물함 내 보관물의 도난, 분실 등으로 인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 4. 탈의실 사물함 전자키 분실 시 수수료(10,000원) 부과		
<기타사항> 1. 사물함 임대는 월 단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회원에 한해서 임대한다. 2. 임대기간은 회원등록기간(매월1일~말일)과 동일하게 한다. 3. 임대신청 기간은 프로그램 재등록, 신규등록 기간 안에만 가능하며 1개월 단위로 납부한다.			











## 체육시설 사용수칙

1. 체육시설에서는 본인 부주의로 발생한 안전사고 및 소지품 분실 등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2. 체육시설 사용자는 사용 전 고혈압, 심장병, 배변장애 등 건강상태에 이상이 있는 경우 직원 또는 강사에게 알려야하며, 알리지 않고 시설을 사용하다 발생한 사고, 손해 발생은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3. 시설 사용 중 타인에게 상해 및 손해를 끼칠 경우 사용자(가해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4. 시설 사용 중 본인 부주의로 시설물을 훼손 또는 파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실비를 변상하여야 합니다.
5. 장애가 심한 장애인 사용자께서는 안전한 시설사용을 위하여 보호자와 동반 입장하셔야 합니다.
6. 시설사용 시 안전사고 예방 및 질서를 위하여 직원 또는 강사의 안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1일 사용시간은 1회 3시간(수영, 빙상, 헬스, 골프 일일 입장 등 포함)에 한합니다.
8. 체육시설 내에서는 재단에서 채용한 강사 외에는 지도 행위를 일체 할 수 없습니다.

[별지 제6호 서식]

<b>시설 사용(<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변경, <input type="checkbox"/> 취하) 신청서</b>			접수 번호		
시 설 명					
신 청 인	주 소				
	성명(대표자명)	전화 번호			
	단체(법인)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내 용	사 용 시 설 명				
	사 용 일 자	사 용 시 간			
	사 용 목 적				
	사 용 인 원				
	이 용 요 금				
	부 대 시 설	<input type="checkbox"/> 냉·난방 / <input type="checkbox"/> 조명 / <input type="checkbox"/> 무선마이크 / <input type="checkbox"/> 유선마이크 / 기타 (        ) ※무선마이크 건전지 대관자 준비(AA 2개)			
	감 면 대 상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부	감 면 사 유		
	변 경 (취 하)	내 용			
	사 유				
※ 첨부서류: 행사계획서, 감면 증빙서류(감면대상 시), 기타 필요한 서류					
「화성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변경, <input type="checkbox"/> 취하)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귀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에서는 시설 사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수집·이용내역[필수] ----- 동의  동의하지 않음

수집항목	수집목적	보존기간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e-mail, 감면 증빙서류	공지사항 문자 안내 전달 목적	5년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내역[필수] ----- 동의  동의하지 않음

제공대상	제공정보의 이용목적	제공정보	보존기간
감사, 평가기관	감사, 평가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e-mail, 감면 증빙서류	5년

※ 법령의 규정에 따르거나 감사 및 평가의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내역[필수] ----- 동의  동의하지 않음

수집항목	수집목적	보존기간
		5년

■ 동의 거부권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관시설 사용 신청이 불가합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며, 세미나실, 실내체육관 대관 시설사용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귀하







## 사 고 경 위 서

### 1. 작 성 자

성 명		소 속		직 급	
-----	--	-----	--	-----	--

### 2. 사고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남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연 락 처		프로그래밍			
주 소					

### 3. 사고 경 위

사고일시		사고장소		최초발견자	
사고내용					
사고 후 조치사항					
기타 특이사항					

20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11호 서식]

## 안 전 근 무 일 지

20 년 월 일 요일

결 재	담당	담당(결재)

번호	점검 내용	점검결과				비고
		오전		오후		
		양호	불량	양호	불량	
1	근무 환경(청리, 정돈, 청소)의 이상 유무					
2	수업장비의 관리상태 이상 유무					
3	안전 표지판의 이상 유무					
4	시설 상태 이상 유무					
5	안전근무 수칙의 이행 여부					

시 간 대 별 자 유 수 영 인 원

시간	실내 온도	상인플 수온	유아플 수온	인원	근무자	시간	실내 온도	상인플 수온	유아플 수온	인원	근무자
0600-0700						1400-1500					
0700-0800						1500-1600					
0800-0900						1600-1700					
0900-1000						1700-1800					
1000-1100						1800-1900					
1100-1200						1900-2000					
1200-1300						2000-2100					
1300-1400											

사고내용 / 사고처리 (6하원칙에 의거하여 서술) / 민원사항

건의 사항

## 체육시설 사용 준수 사항

### 1. 수영장 준수 사항

1. 음주 및 음식물 반입을 금지 합니다
2. 안전을 위하여 50분 수영 후 10분 휴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수영장 내에서는 반드시 수영 모자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4. 수영장 내에서는 절대로 뛰지 마시고, 다이빙은 금지 합니다.
5. 수업 전·후 반드시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6. 안전을 위하여 식사 후 2시간 내에는 수영을 삼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7. 풀에 들어가기 전에 몸을 물로만 깨끗이 샤워하시고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8. 자유수영시에는 키크판, 헬퍼, 오리발, 스노클 등의 수영장비 사용을 금지합니다.
9. 수영장 안에 껌을 빨거나 코를 풀지 마시고, 항상 청결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0. 눈병, 피부병, 기타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환자는 수영장에 입장할 수 없습니다.
11. 수영 중 몸이 떨리고 소름이 끼치며 추워질 때는 즉시 수영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12. 강습 시 사용하신 키크판 및 헬퍼 등 수영장비는 사용 후 제자리에 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13. 불의의 상처를 입었을 때에는 안전요원 및 담당 지도자의 간단한 치료를 받으시고, 지시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14. 수영장 회원은 수상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요원 및 담당 지도자의 지시에 반드시 따라 주시고, 이에 불응 시에는 경고 조치 후 퇴장시킬 수 있습니다.

### 2. 빙상장 준수 사항

1.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2. 신발을 신고 링크장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3. 초보자는 벽쪽으로 가까이 활주하시기 바랍니다.
4. 시설 사용은 1인 1회 3시간 동안 가능합니다.
5. 아이스링크장내에는 음식물을 가지고 입장할 수 없습니다.
6. 활주방향은 시계반대방향입니다. 역주행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7. 활주도중 넘어지면 즉시 일어납니다.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8. 링크장 내에 입장시에는 헬멧과 장갑을 필히 착용하여 주십시오.  
(미착용시 입장을 제한합니다)
9. 위험한 행동 등으로 다른 이용객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삼가 주십시오.  
(눈싸움, 여러 명이 손잡고 활주 등)

### 3. 실내체육관 준수 사항

1. 음주 및 음식물 반입을 금지 합니다.
2. 대관시간은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각종 안전사고에 주의하며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4. 등록된 강습요일 및 시간에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5. 교육기자재 사용 후 정리 정돈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6. 대관은 승인 통보 후 사용일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7. 시설·비품의 파손·훼손·분실 시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8. 운동복과 실내용 운동화를 반드시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9. 수업 전·후 반드시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10. 수업 중에는 반드시 지도강사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11. 행사주관자는 별도의 장비·기구 사용 시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12.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했을 경우 즉시 퇴장 조치합니다.
13. 대관사용 후 사용한 쓰레기는 모두 수거하여 퇴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14. 운동 중 이상증상(구토, 어지러움 등) 느껴지면 운동을 중지하고 지도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15. 안내문·포스터·현수막 등을 게시할 때에는 사전에 승인 후 검인된 건에 한하여 지정된 장소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 4. 헬스장 준수 사항

1. 음식물 반입이 불가합니다.
2. 음주상태에서의 운동은 금합니다.
3. 운동복과 실내용 운동화를 반드시 착용하십시오.
4.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삼갑니다.
5. 회원이 아닌 무단입장 시 출입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6. 시설 사용은 1일 1회 3시간 동안 가능합니다.
7. 기구사용 전에는 반드시 충분한 준비운동을 하십시오.
8. 무리한 운동은 삼가시고 반드시 정리운동을 하십시오.
9. 기구사용법을 모르시는 분은 지도자에게 문의 후 사용하십시오.

### 5. 에어로빅실, GX룸 준수 사항

1. 음주 및 음식물 반입을 금지 합니다.
2. 각종 안전사고에 주의하며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3. 등록된 강습요일 및 시간에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4. 교육기자재 사용 후 정리 정돈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5. 시설·비품의 파손·훼손·분실 시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6. 운동복과 실내용 운동화를 반드시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7. 수업 전·후 반드시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8. 수업 중에는 반드시 지도강사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9.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했을 경우 즉시 퇴장 조치합니다.
10. 운동 중 이상증상(구토, 어지러움 등) 느껴지면 운동을 중지하고 지도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6. 스포츠과학센터 준수사항

1. 일일측정은 온라인 예약으로 측정이 가능합니다.
2. 예약회원은 예약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측정실내에는 음식물 반입이 불가합니다.
4. 음주상태에서의 측정은 금합니다.
5. 측정요원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6. 체성분측정 1~2시간 전 금식(물, 간식)
7. 기능적체력 측정 시 운동복과 실내용 운동화를 반드시 착용하십시오.
8. 측정기구는 되도록 만지지 말아주십시오.
9. 프로그램 회원은 강습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중증질환자(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등)의 경우 측정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11.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삼갑니다.

## 7. 골프장 준수사항

1. 골프장 사용은 1일 1회만 입장 가능 합니다.(3시간 기준)
2. 골프장 사용 시 지정 된 통로(안전선 바깥 쪽)로 이동합니다.
3. 회원카드 미소지시 연습에 제한을 하오니 반드시 소지하여 출입확인을 하여 주십시오.
4. 골프장 사용 시 반드시 골프화 및 실내 운동화를 착용합니다.
5. 골프장 사용 시 골프웨어 및 편한 운동복을 착용합니다.
6. 음주상태에서의 운동은 금지하며 출입을 통제 할 수 있습니다.
7. 개인질병 및 특이 체질 자는 운동 전 담당자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8. 음식물 반입이 불가합니다.
9. 동반하신분의 안전은 사용자의 책임이며 어린이 동반 출입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10. 지정된 프로이외에 레슨을 금하며, 상황에 따라 퇴장 조치합니다.
11. 타석 스크린 이용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합니다.
  - 연습 모드 : 1일 1시간
  - 스트로크 모드 : 1일 1회 18홀
12. 퍼팅장에서는 어프로치 연습을 금합니다.
13. 골프장비 및 개인물품을 개인이 직접 관리하시고 분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4. 큰소리의 대화로 다른 회원님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본인이 사용한 연습클럽은 제자리에 놓아두며 사용했던 타석 및 의자 주변을 정리합니다.